

#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 이용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et Pornography Use Policy in Public Library

정 현 태(Hyun-Tae Jeo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논란       |
| 1. 1 연구의도                    | 4. 1 국내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 이용제한               |
| 1. 2 연구방법                    | 4. 2 미국 Loudoun공공도서관의 차단소프트웨어설치에 대한 위험판례 |
| 2.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사법적 규제동향       | 4. 3 공공도서관의 차단소프트웨어설치에 대한 ALA입장          |
| 2. 1 국내의 '청소년보호법'과 '통신질서확립법' | 5.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 이용정책 대안                 |
| 2. 2 미국의 CDA와 COPA 그리고 CIPA  | 5. 1 도서관 활동의 기본원칙 천명                     |
| 2. 3 기타 -영국, 일본, 싱가포르        | 5. 2 인터넷 이용관련 내규정비                       |
| 3.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차단방식       | 5. 3 도서관의 공공성 확인                         |
| 3. 1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  |
| 3. 2 인터넷내용등급제                |  |
| 3.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를 통한 차단   |  |

###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인터넷음란물 이용정책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각국의 사법적 및 기술적 규제를 살펴보고, 인터넷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guidelines for internet pornography use policy in public librar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and technical restrictions against internet pornography in several countries, and then reviews an examples of the installation of a blocking software in public libraries, and finally proposes the ways to cope with the internet pornography in Korean public library.

키워드: 인터넷음란물, 차단소프트웨어, 음란물 이용정책, 지적자유.

\* 명지대학교 강사(huntj@dreamx.net)  
접수일자 2001년 5월 20일

## 1. 서론

### 1. 1 연구의도

지식정보자원을 호혜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지적 활동을 의도하였던 인터넷이 점차 세계체제적 상업공간으로 변질되면서, 각국은 제공정보의 10%에 이른다는 음란·외설·폭력 등 청소년 유해정보의 노골화된 해악에 대한 차단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지킬박사와 하이드'에 비유되는 인터넷의 역기능이 확산되면서, 하이드의 음성적 파괴력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마다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률로 마련하거나 음란물 차단 목적의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차단소프트웨어 보급 등의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지식정보자원의 조직과 봉사를 임무로 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는 이용자요구를 반영하는 인터넷 이용은 필수이고, 따라서 인터넷 유해정보를 차단하려는 도서관 밖의 환경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인터넷음란물 규제와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도서관의 활동원리에 비추어 볼 때, 견해나 시각의 차이를 이유로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특히 인터넷 상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하려는 차단소프트웨어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은, 원래 의도치 않은 검열을 통해 건전한 정보접근마저 제약하게 되는 기술적 한계와, 유해정보 선별을 위해 설정된 임의 기

준의 적합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각국마다 기본권 침해 및 검열시비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인터넷음란물 이용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법적 및 기술적 규제 방안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공도서관에서의 음란물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논란을 검토하여, 차후 인터넷 이용정책의 구체적 대응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통한 역할에서 견지되었던 도서관 지적자유의 이념이 인터넷 이용과 같은 디지털환경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해 국내외 도서관계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하여 분명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의도하였다.

### 1. 2 연구방법

본고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실태를 파악하거나 음란물 규제의 정당성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책지침을 마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적 분석은 배제되었으며, 인터넷음란물과 관련한 각국의 사법적 및 기술적 대응책과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음란물 이용정책,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음란물 규제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구하는 상황적 분석을 행하였다.

## 2.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사법적 규제동향

## 2. 1 국내의 '청소년보호법' 과 '통신질서확립법'

인터넷 음란물은 과거의 서적과 같은 오프라인 매체에서의 영향력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 유해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은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독자적인 처벌과 단속을 넘은 국제적 사안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적인 공조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는 몇 가지 법령이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제50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인터넷 음란물 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통신기본법'(1991.8.10 법률제4394호)의 제48조 2항에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는 규정도 인터넷음란물 규제의 근거 법규에 해당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서,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인터넷 음란물 유통을 처벌하는 근거법령으로 해석되고 있다(방석호 2000).

지난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구상하였다가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의 원안에서는, '인터넷상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온라인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에 등급을 부여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도입하는 조항이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자료에 등급을 매긴다는 발상을 문제로 지적하고, 개인의 창작물까지 동 위원회에서 음란여부 판단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간주하여, 국가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검열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 조항을 반대하였다.

위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실정법상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이미 음란도서에 대한 자기 검열을 통해 국내 공공도서관현장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필자의 앞선 연구에 의하면(정현태 2000, 69-76), 1999년 7월 서울시 20개 공공도서관중 13개관(65%)이 63권에서 한두 권까지 음란성 서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정법상의 음란성 규정을 정확히 반영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에서 임의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도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유해여부가 의심스런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별도 보관한다

고 하여, 인터넷 음란물 이전에 음란자료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공공도서관의 현실적인 문제로 잠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 2. 2 미국의 CDA와 COPA 그리고 CIPA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이 앞선 나라들에서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유해논란이 선행하게 마련이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선도하던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음란물의 유해성이 공론으로 확인되면서 처벌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차후 국내의 인터넷 환경과 관련하여 유용한 대응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는 1996년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 Decency Act, CDA)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CDA는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연방지방법원의 위헌판결과 연방대법원의 최종 위헌판결로 무효화되었다.

이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재차 시도하려는 목적에서 1998년 '어린이온라인보호법' (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PA)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인터넷의 상업적 포르노그래피 사업자들에게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음란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COPA 역시 문제가 되는 음란물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란과 과도한 검열로 인한 성인의

정보접근권 침해우려를 이유로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상실하였다(황성기 2000).

지난해 12월15일 미국의회에서는 '어린이 인터넷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이 통과되었고, 동 월 21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올해 4월20일부터 발효되었다. 문제의 CIPA는, '도서관 봉사 및 기술법'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LSTA)과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E-rate'로 알려진 '공적서비스할인프로그램' (Universal Service discount program) 등에 따라 연방정부의 공적 기금지원을 받는 모든 공공도서관과 공립학교에서, 인터넷 이용을 제공하는 모든 컴퓨터에 청소년유해 음란자료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선행조건으로 공적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였다(Klein 2001).

이에 대해 미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에서는 인터넷 차단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본래 의도하였던 부정적 유해자료의 차단은 물론 헌법상 보호받을 만한 건전한 정보자료의 유통마저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동 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전 CDA와 COPA에서는 입법의 내용으로 청소년 유해자료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음란 유해정보의 유통을 강제로 규제하려 하였다면, 이와 달리 이번에 제정된 CIPA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보이용자 즉 직접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정보를 접근하는 공공도서관

과 학교의 인터넷용 컴퓨터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인터넷 유해정보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터넷 음란물의 유해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고, 단지 이러한 전시적 입법을 통해 최소한 공공영역으로서 도서관과 학교에서만만큼은 음란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비난받고 있다.

이처럼 정보제공자에 대한 처벌에서 정보이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약으로 그 방식을 바꾼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우선 인터넷상 모든 정보를 일일이 누군가 감시하고 규제해야 하는데 과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어떻게 검열할 것인가의 문제, 둘째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상 미국 국내법으로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 범위에서 범람하는 음란정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 셋째 기술적 검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음란표현물의 유해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넷째 설사 음란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나라와 문화, 계층,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주관적인 성 표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문제이다. 결국 연방정부로서는 이러한 기술적, 사법적 한계를 교묘히 회피한 채, 공적기금을 통해 손쉬운 통제의 범위에 속하는 공공도서관과 공립학교에서의 차단소프트웨어 설치를 채택하였다고 비판되고 있다(방석호 2000).

위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대한 법 제정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유해성을 적용하는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

표현의 모호성을 이유로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를 거쳐 시행하는 각종 청소년 보호명분의 음란물 규제 법률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결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보수적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호한 음란표현 기준과 민주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우려 등을 이유로 법률적용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음란표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일반의 엄격한 기대와는 달리 실제에 적용에 있어 사실적 판단을 유보한 채 다분히 사회적 여론이나 보편적 정서에 의존한 시의적 판단에 근거한다는 부정적 비판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음란물에 대한 사법판단의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미국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인터넷이용에 대한 제약은 각주마다 실정을 달리하여, 보수적인 분위기의 주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해 음란물 사이트의 인터넷 검색을 제한하기 위해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하면, 다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주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장려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을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역사회에 유효한 인터넷음란물 관련 규제입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자료 이용정책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2.3 기타 - 영국, 일본, 싱가포르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의 출발은 상당한 역사적 내력을 갖는다. 다만 최근의 정보통신

환경 특히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규제에는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술과 실제 이용이 활발한 선진국에서 그 규제의 필요와 당위에 대해 공감을 얻고, 실제 사법적 규제를 제도화하는데 국제적인 동조화를 이루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은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음란물 방지를 위해 1978년 '어린이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보호법은 온라인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출판'의 개념에 전자정보의 '전달(transmission)'을 포함하고, 컴퓨터로 조작한 '위조사진(pseudo-photographs)'도 보호법상의 '사진'에 포함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동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도 자신의 컴퓨터에 불법정보가 있다는 것을 통보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1996년부터는 영국정부와 경찰의 후원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ISPA)와 런던인터넷상거래협의회(LINX) 주관아래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이 설립되어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영국과 같이 오프라인 매체에 적용되었던 음란물에 대한 전통적 규제 내용을 연장하여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불법 및 청소년 유해 정보를 규제하는 연구팀이 구성되어 유해정보 차단용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를 함께 맡고 있다. 1997년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인터넷 관련산업계가 결성한 '전자네트워크협의회'(ENC)는 인터넷상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자정을 권고하는 '인터넷사업자윤리실천강령'과 '이용자윤리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싱가폴은 지난 1998년 11월 아동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모든 인터넷서비스업체(ISP)는 불법 및 음란정보를 차단한 '가족용 인터넷서비스'(Family Access Network)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ISP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음란물 관련입법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청소년유해 음란물 규제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저개발국가들은 자국의 정치·문화적 가치에 대한 훼손을 우려하여 인터넷 이용자체를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입법이 강조되는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 3.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차단방식

#### 3.1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차단소프트웨어(blocking software)는 특정 기준을 설정하여 인터넷상 웹사이트 및 정보의 내용을 선별(filtering)하며, 학부모·교사·관계자 등이 인터넷상 특정 웹사이트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기(blocking)위해 설치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한다. '차단'이라는 표현이 '여과(filtering)소프트웨어'라는 용어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금지목적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차단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운영방식은 적용된 차단기술의 형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먼저 차단소프트웨어에 내장되

는 준거리스트 채택방식에 따라 허용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방식과 금지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블랙리스트(Black list)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인터넷 접속경로상 작용하는 지점에 따라 클라이언트 기반(client-based), 서버기반(server-based), ISP기반(ISP-based)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클라이언트기반 차단소프트웨어는 가정의 PC와 같은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되고, 둘째 서버기반 차단소프트웨어는 중소기업의 웹 서버에 설치되며, 셋째 ISP기반 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웹호스트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Filtered-ISP)를 지칭하여 구분하고 있다.

또한 차단소프트웨어가 금지내용을 차단하는 방식도, 첫째 차단소프트웨어에 내장된 금지단어의 색인리스트에 의한 차단방식, 둘째 사전에 확인된 금지사이트들의 차단리스트에 의한 차단방식, 셋째 금지주제 중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을 변경하여 금지사이트를 선별하는 차단방식, 넷째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이 제 3자가 사이트내용을 평가한 것을 등급으로 반영하여 차단하는 방식, 다섯째 텔넷이나, 채팅, 게임 등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접속경로상의 작용위치와 금지내용을 차단하는 방식 등을 조합해 보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차단소프트웨어로 구분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의미를 적용한다면, 다음에 다룰 3.2 인터넷내용등급제나 3.3 ISP를 통한 차단 등도 모두 차단소프트웨어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클라이언트기반 차단소프트웨어와 서버기반

차단소프트웨어에 비교하여 ISP를 통한 차단은, 인터넷 이용 당사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인터넷 접속서비스업체의 차단정책이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양해되어야 하는 선행적 의미를 갖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단소프트웨어는 설치의 번거로움과 인터넷 탐색속도를 저해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가정과 학교, 공공기관, 상업 PC방 등 가능한 모든 인터넷 접속공간에 설치해야하는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슈레이더(A.M. Schrader)는 차단소프트웨어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차단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하는 것은 텍스트기반의 웹자료이며, 그래픽만의 웹자료는 차단하지 못한다. 둘째, 차단소프트웨어의 어느 것도 어떤 사이트가 차단되는지 자발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 셋째, 대부분의 차단소프트웨어 제품들은 사전에 설정된 금지단어, 금지어구, 금지사이트 등의 차단리스트를 사업상의 기밀로 한다. 넷째, 차단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상품으로 유통된다(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제품이다.). 다섯째, 모든 차단소프트웨어들의 개발과정에서 색인운영에 경험을 가진 신뢰할 만한 사서 등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여섯째, 차단소프트웨어가 차단하려는 색인어의 선정과정에서 인터넷과 인간언어의 역동적인 다양성이 과소 평가되어 차단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이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Schrader 1999).

이러한 지적에서처럼 차단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단제품의 개발자들이 무엇이 차단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을뿐더러 차단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적용된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다.

### 3. 2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상품의 바코드처럼 인터넷의 정보의 HTML자료마다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연령에 따라 정보이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은 월드와이드웹컨소시움(W3C)이 1995년에 발표한 인터넷내용선택을 위한 기술 표준(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PICS)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정보제공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부여한 등급을 코드로

만들어서 내용에 메타태그(meta-tag)의 형태로 붙이는 방식을 말한다(방석호 2000).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골자는 인터넷에 참여하는 정보제공자가 자율로 자기가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대해서 성, 노출, 폭력, 언어 등 4 범주에 걸친 청소년 유해정도를 0등급부터 4등급까지 5등급으로 표시하고, 제 3의 등급서비스 기관은 자율등급표시가 없는 정보에 대해 임의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설정하고 있다. 최종 이용자는 인터넷접속 컴퓨터마다 내용선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내용등급에 따라 정보이용을 제한 받는다. 음란물은 불법 정보로 분류되어 등급의 판정을 받게 되며 인터넷 접속 컴퓨터에서 걸러지게 된다. 가장 널리 보급된 등급기준은 인터넷내용등급협회(ICRA)의 RSACi이다(유호경 외 1999).

특히 미국, 일본, EU 등의 정보화 선진국에서는 정보제공자의 자율등급을 평가하고 모

〈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 미국 오락용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인터넷 내용등급 체계 〉

구분 등급	성	노출	언어	폭력
0	성행위 묘사 없음, 로렌스	신체 노출 없음	일상속어, 모욕적인 말투 없음	폭력적인 내용 없음
1	정열적인 입맞춤	신체가 드러나는 옷	가벼운 비어 또는 인체 기능에 비유한 은어	격투로 인한 살상 신체 이 심각한 피해
2	옷을 입은 채로 나누는 성적 교감	신체 일부 노출	절제된 비어, 성기 비유 어를 사용치 않음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상해, 살상 위협을 넘어 선 보복
3	노골적이지 않은 성적 교감	신체 정면 노출	외설적인 언어, 모멸적인 욕설, 공격적이며 저속한 표현	피투성이 살상, 사람에게 대한 상해 또는 살인
4	노골적인 성행위	자극적인 장면 노출	성에 관련된 노골적 비 속어 사용	두분별한 폭력, 잔인하고 이유 없는 폭력



든 정보에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서비스 기관을 민간주도의 자율규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AOL Europe, Microsoft, IBM, British Telecom, Bertelsmann Foundation 등 다국적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내용등급협회'(ICRA)를 결성하면서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민간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영리목적의 사업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제약적 결정보다는 오히려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미국의 통신품위법(CDA) 사례에서처럼 형사처벌을 통해 직접적으로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인터넷 음란물 규제를 위한 차선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형식은 차단소프트웨어의 방식과 큰 차이는 없다. 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접속 컴퓨터에 필터링제품을 설치하여 내장된 금지어구 색인이나 금지사이트 리스트 등의 배제 기준을 통해 음란물을 걸러낸다면, 인터넷내용등급제 역시 인터넷 접속 컴퓨터에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다만 인터넷내용등급제에서는 내용선별의 기준이 제 3의 서버에 등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음란성 여부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차단소프트웨어의 경우 제품마다 개발자의 자의적 선별기준이 적용되어 색인이나 리스트가 내장됨으로써 음란성의 기준이 프로그램 개발자에 의해 임의로 판단된다는 불합리성이 가장 큰 결점이었

다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 자율과 제 3자에 의한 임의 등급 부여란 점에서 음란성 여부 판단과정이 다소 정보제공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음란성에 대한 준수 법적 판단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가장 큰 결점 역시 음란물에 등급을 부여할 때 나라마다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구적 규모의 정보제공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통정할 것인가의 난제를 안고 있다.

### 3.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를 통한 차단

또 한가지 음란물을 규제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은, 1999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국내 실시를 추진하다 유보된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일명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한 차단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정보검색을 제공할 때, ISP의 호스트에 설정되는 프록시 서버 기술을 응용한다. 프록시 서버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근을 체크하여 검색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캐싱기능 외에도, 이용자들의 시스템이용 상황을 체크하거나 부적절한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일종의 보안 및 감시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ISP의 프록시 서버를 통해 인터넷 가입자의 검색내용을 확인하고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로서,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음란물 이용을 제한하는 기술적 방안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를 통해 인터넷에 제공하는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 차단 목적으로 인해 성인들의 정보이용도 제약을 받는 불합리한 과잉규제라는 비판은 물론, 실제 ISP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인터넷 탐색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리라는 기술적 효율성의 부담이 가장 큰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까지 ISP는 자사의 호스트를 통해 유통되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였으나, 국제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와 관련하여 독일,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 등에서 ISP의 간접적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로 국내에서 한글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업체 중 일부 업체가 검색과정에서 음란용어나 음화의 검색을 차단함으로써 음란물 접속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ISP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4.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논란

##### 4.1 국내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 이용 제한

국내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추정할 수 자료로서 2000년 3월 문화관광부에 의해 발표된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에 의하면, 전자자료실 명칭으로 디지털자료 이용공간을 설치한 공공도서관은 381관중 172

관(45%)으로 집계하고 있다.

최근 서혜란의 연구에 의하면, 1999년 말 전국 364관의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도서관은 모두 249관(70.9%)이며 이중 이용자에게 인터넷봉사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177개관(50.4%)인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 비율은 대략 50%내외의 수준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전국적 인터넷 이용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편차는 매우 커서, 강원과 충북지방의 공공도서관은 21~30%만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반면, 서울 지방의 공공도서관은 100% 모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서혜란 2001).

전국에 걸쳐 보급된 초중고교의 인터넷접속망이나 PC방과 우체국 등에 비교한다면, 정보화 시대의 견인차를 자부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인터넷 이용시설을 제공한다는 명분이 부끄러울 정도의 여건으로 비교된다. 다만 당국은 2002년까지 디지털자료 이용공간 조성을 위해 381개 공공도서관 모두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여 규모에 따라 각 5대~50대의 최신기종의 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서울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1997년 초부터 전자정보자료실 내에 인터넷검색용 PC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모가 큰 곳은 50여대에서부터 적게는 5대까지 설치하여, 대기자가 있을 경우 한시간을 제한시간으로 배정하고, 간단한 기록만으로 자리를 배정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2월 15일 시점으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전자정보자료실에 대한 방문과 전자우편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검색용 PC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곳은 17개관 중 6개관(35%)이었다. 6개관중 한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자료실의 인터넷 이용PC중 일부에만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1개관에서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 검색용 PC에 음란물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던 것은 1998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NCA-patrol'이라는 차단소프트웨어를 보급하면서부터였다. 1999년에도 정보통신부와 조

선일보사에서 음란물 추방 캠페인과 관련하여 국내개발 차단소프트웨어인 '수호천사'를 공공도서관에 보급하였다. 2001년 2월 12일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각종 차단소프트웨어는 플러스기술(주)의 '수호천사 2.0'를 비롯하여 모두 28종이 유통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서관들은 차단소프트웨어를 부분적으로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 도서관은 모두, 자관의 인터넷 검색용 PC의 성능이 낮은 기종인데다,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검색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프로그램이 멈춰서 버리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원치 않는 사이트까지 차단하여 이용자의 항의가 잦았던 것을 제거의 이유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인터넷 이용장비 및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2001.2.15 현재)〉

도서관	검색용	멀티미디어실	총보유 PC수량	차단소프트웨어설치
강 남	5	12	38	X
강 동	5	15	42	O
강 서	4	11	40	O
개 포	5	20	36	X
고척	6	15	39	△(부분설치)
구로	5	12	34	X
남산	12	49	108	X
도봉	5	17	51	O
동대문	8	9	49	O
동작	5	8	32	X
서대문	7	13	43	X
송파	8	14	45	O
양천	6	44	82	X
어린이	4	5	35	X
용산	6	12	49	X
정독	14	20	87	X
종로	8	6	53	X

〈국내개발 차단소프트웨어 (2001.2.12 현재)〉

(회사명/ 제품명. -연락처)

플러스스 기술(주)/ 수호천사 2.0. -hmjeong@mail.plustech.co.kr

에이지 시스템/ 맘씨.

한울정보기술/ pcKey, pcManager.

(주)액티브웹/ 액티브웹. -wbkim@activeweb.co.kr

(주)소만사/ Webkeeper. -myjini@somansa.co.kr

(주)아크테크놀로지/ SpeedWeb. -jhchoi@arktech.co.kr

(주)아이탑/ 파로스. -eslee@i-top.co.kr

(주)신홍미디어/ AntiSite.

(주)사이버테크/ CyberNAT 2000.

(주)데시콤/ 보라매. -center@desicom.co.kr

(주)인디시스템/ 교육용브라우저. -jeff@indi-tech.com

(주)택공일/ 녹스2.(보급: 삼성전자,이찬진컴퓨터교실)

(주)스콧정보통신/ 넷킵이.

(주)데이터케슬/ 대제학.

(주)아이비아이/ Netpia Browser. -yochoi@netpia.com

(주)세넥스테크놀로지/ 방패 盾. -senextech@senextech.com

(주)송우정보/ Bess.

킹스정보통신(주)/ Mohani.

INCA/ 유해정보차단기.

넷트랙/ CYBER GUARD.

매직케슬/ Magic Patrol. -mjun@computing.soongsil.ac.kr

애드버네트/ 한글 WEBSense.

어울림 정보기술/ 시큐어웍스 v2.0. -devteam@oullim.co.kr

한국정보공학(주)/ 안티엑스. -jhbaek@kies.co.kr

미디어랜드/ TCO! meter.

다래정보통신(주)/ 스푼(Spoon). -ticlab@ticom.co.kr

SVC 테크놀러지/ 포트라. -yskim@porra.com

(주)인터피아월드/ 지킴이 v1.5. -http://www.jikimi.net

http://www.icec.or.kr/frame14.html(2001.2.12)

들었다.

2000년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차단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적 받았지만, 전자정보자료실 대부분은 유해음란사이트와 채팅, 게임 등의 이용을 금지하는 주의문을 게시하고, 담당자가 육안으로

감시 가능하도록 좌석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공공도서관에서 음란물을 보려는 이용자들이 거의 있지도 않고, 인터넷 검색화면이 다른 이용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서혜란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국 177개 공공도서관 중 148개관(83.6%)이 이용자의 접속내용을 제한하는 정책문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도서관은 141개관(79.7%)이며, 실제로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도서관은 64개관(36.2%)임을 밝히고 있다(서혜란 2001).

#### 4. 2 미국 로다운(Loudoun)공공도서관의 차단소프트웨어설치에 대한 위헌판례

199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음란물 제공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시도하였던 통신품위법(CDA)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즈음 다소 보수적인 분위기를 자처하는 동부의 버지니아주 로다운군(Loudoun County)의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는, 1997년10월 '어린이포르노와 음란물' 차단을 목적으로 모든 도서관 컴퓨터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인터넷 성추행에 관한 정책' (Policy on Internet Sexual Harassment)을 채택하고, 자관의 모든 인터넷 이용 컴퓨터에 퀴크(Quaker)사의 엑스스톱(X-Stop)이라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

동년 12월 차단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해 자신의 웹사이트가 차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차단정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로다운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차단소프트웨어 엑스스톱은 유해하지도 않은 많은 성(sex) 관련 사이트 접근을 제한할뿐더러, 제작사인 퀴크사는

차단기준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은 채 임의로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도서관운영위원들은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차단정책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이들은 인터넷이란 일종의 '도서관상호대차' 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대한 부분적 차단정책은 도서관에 구비된 특정자료에 대한 접근금지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도서관이 유해자료를 선정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차단정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인터넷은 일종의 '백과사전과 같은 통합시스템'으로 비유하고, 인터넷상의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백과사전의 일부를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민들은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차단소프트웨어의 기준을 과신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인이용자의 정당한 정보이용권을 침해하는 차단정책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ALA 1998a).

결국 재판부는 공공도서관이 청소년 유해를 이유로 인터넷 이용 컴퓨터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정보접근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당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로다운공공도서관이 채택한 차단정책이 충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소년 유해를 이유로 합법적인 성인의 인터넷 이용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차단정책의 시행을 영

구히 금지시켰다(방석호 2000).

#### 4. 3 공공도서관의 차단소프트웨어설치에 대한 ALA입장

미국도서관협회는 위 로다운공공도서관에서의 차단소프트웨어설치에 대한 미국대법원의 위헌판결이 있자 1997년 7월2일 채택한 '인터넷차단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결의' (부록)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차단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미국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연방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권을 제약하는 도서관에서의 차단소프트웨어설치는 도서관관리선언에도 위배된다고 확인하였다(ALA 1997a).

동 협회의 지적자유위원회에서(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에서 1997년7월1일 발표한 '인터넷 여과에 대한 성명' (Statement on Internet Filters)에 의하면,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견해나 내용의 차이를 이유로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식 정보 광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며, 특히 차단소프트웨어설치를 통해 일부의 혐오자료에 대한 접근제한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정보까지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문제로 도서관에서의 상업용 차단소프트웨어 사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ALA 1997b).

공공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미국도서관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제약하는 차단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직원의 간섭을 금하고 있다. 실제 미국도서관협회는 1998년

'공공도서관 인터넷이용정책개발을 위한 지침 및 고려사항' (Guidelines and Considerations for Developing a Public Library Internet Use Policy)에서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접속용 PC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도서관 지적자유에 배치되는 것으로, 함축적인 명문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 컴퓨터마음란물 이용을 금지하는 주의문을 게시하고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시야로부터 자유롭도록 자리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ALA 1998b).

#### 5.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 이용정책 대안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이 타당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보광장으로서 공공도서관 본래의 이념인 지적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둘째, 색인이론의 원리에 비추어 차단소프트웨어가 선정한 리스트는 본래의 의도와 관계없이 긍정적 내용까지도 차단하는 오류를 갖고, 역동적으로 변화무쌍한 인터넷 자원에 대해 언어적 의미의 뉘앙스를 적절히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이용자의 개인적 성숙도와 부모의 의견이 고려되지 못한 인터넷 필터링은, 획일적 기준으로 이용자의 지적 수준을 강요하는 불합리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Schrader 1999).

도서관에서의 인터넷음란물 문제는, '그것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무해한가?' 또는 '청소년에게 제공해도 좋은가? 나쁜가?' 에 대한 것은 아니다. 오랜 도서관학적 전통에 의하면,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유익한 것처럼, 사서들은 인터넷음란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개연성에는 이의를 갖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음란물이란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공공도서관에서의 검열시비는 권력적 지위의 일방에 의해서 다수의 민주적인 합의가 파괴될 때 발생하는 '사상의 시장'에 대한 훼손의 문제로 간주된다. 즉, 정보와 사상의 적절한 유통경로로서의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합의되지 않은 가치를 근거로 권력적 소수나 물리적 다수에 의해 훼손될 때에 도서관의 역할이 비난받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입장은, 검열에 대한 조건없는 반대를 명분으로, 일체의 음란물에 대한 무정부적 방임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나름의 원리를 관철하고자 하는 도서관 자체의 기반철학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현태 2000, 31-36).

국내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이용환경에서는 굳이 미국에서와 같이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의 사법적 대책이 아니더라도 이용자 대부분이 공공시설인 도서관에서 음란물을 접속하지도 않고, 접속하려는 이용자도 매우 드물다는 것이 현장 사서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국내 실정에서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접하는 경로로서 가정의 PC와 상업적 PC방 등에 대

한 대책이 보다 더 시급하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접속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내 실정을 이유로 도서관의 인터넷 음란물 대책이 미국에서와는 달라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5. 1 도서관 활동의 기본원칙 천명

공공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차단소프트웨어의 설치에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제약하는 위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은, 곧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강조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음란물을 보아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도서관측은 이용자의 정보이용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되, 인터넷 이용을 제한 할 때는 합축적이고 성문화된 인터넷이용 정책문 제정을 통해 납득할 만한 이유와 기준을 제시하고, 인터넷 이용방식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제한적인 공중의 광장으로서 실정법상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공간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인터넷음란물에 접근하기 위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려 할 때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도서관 스스로 권장사이트를 풍부히 구축하며, 유해자료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 차단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한 성인들의 기본권까지 제약하는 모순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청소년 검색용 일부 컴퓨터에만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청소년

과 성인의 인터넷 이용을 차별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자체에서 비롯하는 검열시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은 되지 못한다.

### 5. 2 인터넷 이용관련 내규정비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려 할 때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절차를 통해 적절한 내규를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과의 마찰에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터넷이용정책 관련 내규의 제정에 있어서 특히, 공공도서관은 도서관활동의 지적자유라는 이념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현실적인 운영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유해 음란폭력물에 대한 규제조항이 관련 입법에 어떻게 규정되는지, 또한 인쇄 매체를 포함하는 모든 도서관자료의 제공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계 전문가와 협의가 요청된다.

다만 유의할 것은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밖

의 사법환경을 파악해 내부의 규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관련입법의 반대나 예외조항 설정 등을 통해 도서관의 일관된 지적자유의 이념을 사회적으로 공인받도록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5. 3 도서관의 공공성 확인

공공도서관은 해당사회 지식자원의 민주적 광장으로서 도서관 내외 어느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접근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음란·외설·폭력 등의 청소년 유해여부 판단은 그것이 인쇄 매체인건 혹은 인터넷상 데이터인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직 법원만이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 유입되는 정보자료의 유해성여부 판단은 도서관의 권한일 수 없으며, 당연히 이용자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제약하는 차단소프트웨어의 설치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방석호 2000.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2000년 9월 5일. [서울: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외]. [cited 2001.2.1].

<<http://freeonline.or.kr/0905bang.html>>.

서혜란. 2001. 한국공공도서관의 인터넷서비스:

현황과 전망. [정보관리학회지], 18(1): 23-42.

유호경 외. 1999.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국내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cited 2001.2.1].

<<http://www.icec.or.kr/frame8.html>>.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 인터넷과 정보내용



- 등급자율표시제. [cited 2001.1.11].  
 <<http://www.icec.or.kr/frame1.html>>.
- 정현대. 2000.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황성기. 2000. 인터넷규제와 관련한 입법례와 판례경향. 『제2차 정책포럼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청소년문제와 대책’』, 2000년 10월 18일.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ALA. 1997a. Resolution on the Use of Internet Filters. [cited 2000.6.20].  
 <<http://www.ala.org/alaorg/oif/filters.html>>.
- ALA. 1997b. Statement on Internet Filters. [cited 2000.6.20].  
 <<http://www.ala.org/alaorg/oif/filters.htm>>.
- ALA. 1998a. Guidelines and Considerations for Developing a Public Library Internet Use Policy. [cited 2000.6.20].  
 <<http://www.ala.org/alaorg/oif/internet.html>>.
- ALA. 1998b. Frequently Asked Internet Questions. [cited 2000.7.1].  
 <<http://www.ala.org/alaorg/oif/interfaq.html>>.
- IFLA. 1999.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cited 2001.2.1].  
 <<http://www.faife.dk/policy/iflastat/iflastat.htm>>.
- Klein, Marty. 2001. “Censoring the Internet Won’t Protect Kids”. Newsday, 2001.1.31 [online]. [cited 2001.1.31].  
 <<http://www.newsday.com/coverage/current/editorial/wednesday/nd5374.htm>>.
- Minow, Mary. 1997. “Filters and the Public Library: A Legal and Policy Analysis”. [cited 2001.2.1].  
 <[http://www.firstmonday.org/issues/issue2\\_12/minow.htm](http://www.firstmonday.org/issues/issue2_12/minow.htm)>.
- Schrader, Alvin M. 1999. “Internet Filters: Library Access Issues in a Cyberspace World” In Opening Session, on August 25, 1999, 65th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IFLA, Bangkok, Thailand, August 20-28, 1999. [cited 2000.6.27].  
 <<http://www.faife.dk/papers/others/schrader.htm>>.

## <부 록>

### 『인터넷 차단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결의』

하나, 97년 6월 26일, 연방최고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적 원리를 절대적으로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상의 통신은 가장 높은 수준의 헌법적 보호를 받을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 대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인터넷상의 교섭통신이 도서, 잡지, 신문, 거리연설자 등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인터넷이 세계각지 수백만의 독자, 검색자, 연구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연설하고 청취하는 거대한 플랫폼과 같으며, 전화선에 연결된 누구라도 비누박스 위 연설 보다 목소리 큰 도심의 연설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나, 도서관에 대한 대법원의 극명한 입장은, 인터넷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서가상의 도서에 대해 적용하는 헌법상의 보호를 인터넷상의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 인터넷은 거대한 민주적 광장으로서 전적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을 만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는 도서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대법원은 개인들로 하여금 전세계를 상대로 발언하고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도서관은 달리 기회를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 대법원의 판결은 그런 접근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 도서관에서 차단소프트웨어의 이용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을 방해하고, 합중국 헌법과 연방 법률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도서관과 그 운영자들을 위법으로 내몰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결의하기를, ALA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에의 접근을 막기 위해 도서관에서 차단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은 도서관권리선언에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1997년 7월 2일, 미국도서관협회 평의회에서 채택.